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26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김장겸 · 강대식 · 최은석
강명구 · 서천호 · 박덕흠
김소희 · 김정재 · 이상휘
이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하도록 하여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송부하여 투표지분류기 등 전산장비를 통해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출구 조사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금지하고 있음.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이후 투표함의 보관·이송, 개표절차의 투명성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으며, 최근 선거관리 과정에서의 각종 부실 사례로 인해 선거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개표절차는 전산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개표 과정의 검증 가능성과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고, 개표가 개시되어 국민의 참정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선거쟁송에 있어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선거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선거쟁송의 무분별한 남용과 이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와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본래 목적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에 면죄부를 주는 조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권자의 투표 편의를 보장하고, 개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마감된 후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출구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시점을 개표 개시 이후로 조정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 계산을 원칙으로 하되, 수량 확인을 위한 장치를 보조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선거쟁송이 게시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되, 위반의 정도·참정권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위법임을 명시하는 것을 전

제로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때에는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함(안 제15조제2항).

나. 현재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 등).

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제44조의2, 제65조제5항, 제148조, 제155조제2항·제4항, 제162조 삭제 등).

라. 개표 개시와 선거일의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이후에 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제167조제2항 단서 및 제175조제2항).

마. 개표는 원칙적으로 투표소에서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계수기만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8조제1항 및 제2항).

바.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

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해 공표하고,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등의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표함(안 제178조제3항 및 제4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2조제4항 신설).

아. 선거관리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하되, 위반의 정도·참정권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효로 결정하거나 판결하도록 하고, 이 경우 위법 사실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2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때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9조제3호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을 “선거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를 “투표참관인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을 “투표관리관을”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중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23日”을 “22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4일”을 “13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수요일”을 각각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요일”을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수요일”

을 각각 “화요일과 그 다음 날”로 한다.

제4장에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일 첫째 날 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 둘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를 “투표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4호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를 각각 “투표소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을 “투표소를”로 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2호 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를 “투표소”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제14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로 한다.

제6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 중 “選舉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를 “제175조제2항에 따른 개표 개시시각까지”로 한다.

제122조의2제3항제6호 중 “投票參觀人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를 “投票參觀人の”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の 手當”을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의 규정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을 “수당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를 “투표참관인의”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투표에 관한”을 “투표 및 개표에 관한”으로,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을 “1명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각각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투표사무를”을 각각 “투표 및 개표사무를”로 한다.

제148조를 삭제한다.

제151조제3항 중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을 “우편”으로,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투표함의 수는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선상투표신고인수”

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전투표 ·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選舉日”을 “선거일 둘째 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투표소를 오후”를 “투표소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를 “닫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선거일 오후”를 각각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158조를 삭제한다.

제162조를 삭제한다.

제16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6조의2제2항 중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을 “투표관리관”으로 한다.

제167조제2항 단서 중 “投票마 감시각까지”를 “제175조제2항에 따른 개표 개시시각까지”로 한다.

제170조 및 제1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173조제1항 본문 중 “選舉日전”을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른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를 위하여 선거일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4조를 삭제한다.

제17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개표는 선거일 둘째 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에서 개시한다.

제176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전투표·거소투표”를 각각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우편투표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우편투표함”으로, “選舉日”을 “선거일 둘째 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다.

제177조의 제목 “(投票函의 開函)”을 “(우편투표함·재외투표함의 개함)”으로 한다.

제1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을 “투표지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만을 보조적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을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투표관리관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한다.

④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라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1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1조의 제목 “(개표참관)”을 “(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

會는 開票參觀人”을 각각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開票參觀人は 開票所안에서”를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로,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을 “해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을 “투표관리관은”으로, “개표참관인”을 “투표참관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삭제한다.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안에서의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1조의2 및 제1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명을, 무소속후보자는 3명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명(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

는 때에는 9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투표참관)제7항 및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개표소”로 본다.

⑦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1조의3(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관리관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8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3조의 제목 중 “開票所”를 “개표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

문 중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 등 개표장소(이하 “개표장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이 開票所”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 중 “開票所”를 각각 “개표장소”로 한다.

제184조 중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85조제1항 중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를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표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개표록을 작성한다.
2.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한다.

제212조의 제목 중 “거소투표·사전투표”를 “거소투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4조를 삭제한다.

제2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5조(개표관람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제2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8조의16제2항 중 “선거일 오후”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218조의18제1항 후단 중 “일련번호에 관하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용한다”를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18조의24제2항 중 “선거일 오후”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오후”를 “둘째 날 오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오후”를 “둘째 날 오후”로 한다.

제218조의25제1항 후단 중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를 “거소투표”로 한다.

제2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

목 외의 부분) 중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를 “때에는”으로, “판결한다”를 “판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유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 정도
2.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
3.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
4.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정도
5. 선거 무효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③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 결정문 또는 판결의 주문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를 “투표참관인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을 “투표관리관을”로 한다.

제23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때 제242조제1항제1호 중 “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을 “재외투표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開票所에서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하여 開票參觀人”을 “개표장소에서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의 규정에 따라 투표참관인 또는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8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56조제3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제16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第183條(開票所の 出入制限과 秩序維持)第1項의 規定에”를 “제183조(개표장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을”로, “開票所에”를 “개표장소에”로 한다.

제261조제4항 중 “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을 “제17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사목 중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항”을 “제147조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단서, 제162조제4항, 제181조제3항”을 “단서”로, “참관”을 “투표 또는 개표의 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바목 중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 제2항”을 “제147조제9항”으로,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제278조제4항 단서 중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을 “제218조의19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投票 및 開票事務員”을 “투표사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선거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u>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u>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 ----- <u>선거일</u>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 ② (생략)	제11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u>투표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과</u>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③ ----- ----- <u>투표참관인과</u> ----- ----- ----- ----- ----- ----- ----- ----- ----- ----- -----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12조(선거관리) ①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選舉事務를 統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218조에 따른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제218조의2에 따른 재외투표관리관의 違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를 取消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15조(선거권) ① (생략)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2. (생략)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

제12조(선거관리) ① -----

-----투표관리관
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선거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다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
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단서 신설>

제33조(선거기간) ① 選舉別 選舉
期間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大統領選舉는 23日
2. 國會議員選舉와 地方自治團
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
는 14일

② · ③ (생략)

第34條(選舉日) ① 任期滿了에 의
한 選舉의 選舉日은 다음 各號
와 같다.

1. 大統領選舉는 그 任期滿了日
전 7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國會議員選舉는 그 任期滿了
日전 50日 이후 첫번째 수요
일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
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선거기간) ① -----
-----.

1. -----22일
2. -----

---13일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34條(選舉日) ① -----

-----.

1. -----
-----화요일
과 그 다음 날
2. -----
-----화요
일과 그 다음 날

3.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는 그 任期滿了日전 30日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日이 國民生活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民俗節 또는 公休日인 때와 選舉日前日이나 그 다음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생략)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

3. -----

-----화

요일과 그 다음 날

② -----

---화요일과 그 다음 날---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
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
궐선거·재선거 중 3월 1
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
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한다.

2. (생략)

③ ~ ⑤ (생략)

<신설>

-----.

가. -----

-----화요일과
그 다음 날-----.

나. -----

-----화요일과 그
다음 날-----.

다. -----

-----화요일과 그 다
음 날-----.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선거일의 기준) ① 이
법에서 “선거일 전”이란 선거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생략)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 첫째 날 전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선거일 후”란
선거일 둘째 날 후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선거일 현재”란
선거일 둘째 날 현재를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선거일까지”란 선거일 둘째 날까지를 말한다.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소에서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에서 투표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3. (생략)

4.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투표소에-----

--

2.·3. (현행과 같음)

4. 투표소에-----

--

5. 투표소를-----

5의2. ~ 6. (생 략)

⑤ ~ ⑧ (생 략)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

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
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
자료 복사본을 이용하여 하나
의 선거인명부(이하 “통합선거
인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합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③ 통합선거인명부는 전산조직
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④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제148조제1항에
따른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한 선거인
명부를 출력한 다음 해당 읍·
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봉합·봉인하여 보관하여
야 하며, 그 보관과정에 정당추

5의2. ~ 6. (현행과 같음)

⑤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천위원이 참여하여 지켜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그 시각까지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4항에 따라 출력한 선거인명부를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열람·사용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출력한 선거인명부의 보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4. (생략)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

-----.

-----.

1. (현행과 같음)
2. 투표소-----

3. 4. (현행과 같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략)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생략)

②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選舉에 관한 事務를 처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투표참관인-----

-----.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현행과 같음)

② -----

리하기 위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事務員(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大統領選舉

選舉事務所に 市・道數의 6
倍數 이내와 市・道選舉連絡所
에 當해 市・道안의 區・市・
郡(하나의 區・市・郡이 2 이
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
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한
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數(그
區・市・郡數가 10 미만인 때
에는 10人)이내 및 區・市・郡
選舉連絡所に 當해 區・市・郡
안의 읍・면・동(제148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
치・폐지・분할・합병 직전의
읍・면・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7조제1항, 제118조제5호
및 제121조제1항에서 같다)수
이내

2. ~ 8. (생략)

③ ~ ⑧ (생략)

[illegible]

1. -----

[illegible]

-----읍 · 면 · 동이
설치 · 폐지 · 분할 ·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 · 면 · 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생략)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 ⑭ (생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選舉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

제65조(선거공보)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제175조제2항에 따른 개표 개시시각까지-----

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여 報道할 수 없다. ② ~ ⑭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 5. (생략) 6. 第161條(投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u>投票參觀人</u> 및 제162조에 따른 <u>사전투표참관인</u>의 手當과 식비 7.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한 <u>開票參觀人</u>의 手當과 식비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u>사전투표참관인</u>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	----- ----- -----. ② ~ ⑭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投票參觀人</u>의----- ----- 7. <u>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의 規定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과</u>----- ④ ----- ---<u>수당</u>은----- ----- -----
--	---

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
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
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
에게만 지급한다.

⑤ (생 략)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
투표관리관) ① 구·시·군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
관 1명을 각각 둔다.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
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
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
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선거관리위
원회로부터 투표관리관 및 사
전투표관리관의 추천 협조요구
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
에 따라야 한다.

-----.

투표참관인의-----

-----.

⑤ (현행과 같음)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① -----

-----투표 및 개표

에 관한-----

-----1명을

-----.

② 투표관리관-----

-----위촉한다.

③ -----

-----투표관리관-----

-----.

④ <u>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u> <u>리관의 위촉 및 해촉, 수당 그</u> <u>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u> <u>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생략)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u>투표사무를</u> 보조하게 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 무원을 위촉하되, 選舉日前 3日 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 다. 1. ~ 4. (생략) 5. <u>투표사무를</u>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⑩·⑪ (생략)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u> <u>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u> <u>(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u> <u>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u> <u>·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u> <u>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u> <u>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u> <u>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u>	④ <u>투표관리관</u>----- ----- -----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u>투표 및 개표사무를</u>-----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투표 및 개표사무를</u>----- ----- ⑩·⑪ (현행과 같음) <삭제>
--	---

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2. 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

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 설치 장소의 제한·사용협조, 설비, 사전투표사무원의 추천 협조 등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위조·변조·삭제 등

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② (생략)

③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이하 “사전투표함”이라 한다)과 郵便으로 접수한 投票를 보관하는 投票函(이하 “郵便投票函”이라 한다)은 따로 작성하되, 그 數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정한다.

④ · ⑤ (생략)

⑥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우편-----

투표함의 수는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선상투표신고인수-----

-----.

④ · ⑤ (생략)

<삭 제>

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 ⑨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생략)

②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되, 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투표자수 등을 고려하여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은 사전투표소에 이를 準用

⑦ 제1항-----

-----.

⑧ · ⑨ (생략)

第155條(投票時間)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한다.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에서 投票를 開始하는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함 및 記票所内外의 異狀有無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參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개시시각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投票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도착되어야 한다.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30분)에 열고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9시 30분)에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거소투표-----
-----선거일 둘째 날-----

-----.

⑥ -----

-----투표소를
선거일 둘째 날 오후-----

닫으며, 사전투표소(제1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제외하고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 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오후 6시 30분에 열고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감염병의 전국적 대유행 여부, 격리자등의 수,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는 각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오후 8시”는 각각 “오후 9시 30분”으로 보되, 제6항 단서에 따라 투표하는 경우 “오후 6시” 및 “오후 8시”는 각각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포함한 투표 마감시각”으로 본다.

닫는다. -----

-----.

⑦ (현행과 같음)

⑧ -----

-----선거일 둘째 날 오후
-----선거일 둘째 날 오후-----

-----.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

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
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
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
표할 수 있다.

②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
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
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
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
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
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
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
다.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
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
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삭 제>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구역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기간 중 매일의 사전투표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 투표지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하여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사전투표함을 개합하고 사

전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사전투표참관인 1명씩을 지정하여 해당 우체국까지 동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이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한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2. 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투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투표함을 직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인계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함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⑦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투표소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57조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전기통신 장애 등이 발생하

는 경우 사전투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62조(사전투표참관) ① 사전투

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으
로 하여금 사전투표 상황을 참
관하게 하고, 제158조제6항제1
호에 따라 관할 우체국장에게
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후보자마
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사전투표
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사전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
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에
따라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
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구·시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 사람을 사전투

<삭 제>

표참관인으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候補者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選舉權者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

⑤ 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는 “不在者投票所를 設置·운영하는 選舉管理委員會”로 본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로,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참관인”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본다.

⑥ 사전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로 정한다.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의 출입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생략)

④ 사전투표소의 질서유지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으로 본다.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생략)

② 사전투표소(제149조에 따라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64條(投票所 등의 秩序維持)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第165條(武器나 凶器 등의 携帶

禁止)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
한다)에서의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第166條(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생
략)

⑤ 사전투표소 내외에서의 소
란언동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1
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은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투
표사무원”은 “사전투표사무원”
으로, “선거일에”는 “사전투표
소 안에서”로 본다.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
위 금지) ① (생략)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
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
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
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
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
를 기록한다.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 ① (생
략)

② 選舉人は 投票한 候補者の

第166條(投票所内外에서의 騷亂
言動禁止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
위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관리관-----

-----.

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 ① (현
행과 같음)

② -----

者別로 投票參觀人 1人과 호송
에 필요한 正服을 한 警察公務
員을 2人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第171條(投票關係書類의 引繼) 투
표관리관은 投票가 끝난 후 選
舉人名簿 기타 選舉에 관한 모
든書類를 管轄區·市·郡選舉
管理委員會委員長에게 引繼하
여야 한다.

第172條(開票管理) ①開票事務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행한다.

②第173條(開票所)第2項의 規定
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
를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區·
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을
각 開票所에 비등하게 지정·
배치하되, 이 法에 의한 開票管
理에 관하여 당해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의 議決을 요하
는 사항은 당해 開票所에 배치
된 委員[「선거관리위원회법」
第4條(委員의 任命 및 위촉)第1
3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委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

<삭 제>

제172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구
·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
괄한다.

다]數의 過半數의 議決로 決定하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의 職務는 각각 당해委員長과 副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지명한 委員이 행한다.

③開票를 開始한 이후에는 開票所에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 在籍委員(第17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한 때에는 당해 開票所에 배치된 委員을 말한다)의 過半數가 참석하여야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 第4條第13項 및 同法 第5條(委員長)第4項의 規定은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選舉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73條(開票所) ①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日전 5日까지 그 區・市・郡의 事務所所在地 또는 당해 管轄區域(당해 區域안에 적정한 場所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區域을 포함한다)안에 設置할 開票所를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

第173條(開票所) ①-----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른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를 위하여 선거일전-----

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公告하여야 한다.

②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2개 이상의 開票所를 設置하는 때의 開票의 節次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第174條(開票事務員) ①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事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開票事務員을 두되, 選舉日 전 3日까지 그 姓名을 公告하여야 한다.

②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第175條(開票開始) ① (생략)

②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管轄區域안에 2이상의 選舉區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제176조(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郵便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政黨推薦委員의 참여 하에 이를 즉시 郵便投票函에投入·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58조제6항제2호에 따라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합·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

第175條(開票開始) ① (현행과 같음)

② 개표는 선거일 둘째 날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소에서 개시한다.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① -----

-----거소투표-----

-----.

<삭 제>

③ -----
-----우편투표함-----

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開票參觀人の 參觀하에 選舉日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開票所로 옮겨서 一般投票函의 投票紙와 별도로 먼저 開票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략)

第177條(投票函의 開函) ①·② (생략)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開票는 投票區別로 구분하여 投票數를 계산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④ -----우편투표함-----

-----선거일
둘째 날-----

-----.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개 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第177條(우편투표함·재외투표함의 개함) ①·② (현행과 같음)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한다.

② -----

--투표지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만을 보조적으로-----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
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
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
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
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
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
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
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
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
를 기재한다.

<신 설>

-----.

③-----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소에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투표관리관은 공표 전에 득표
수를-----

--. <단서 삭제>

④ 제176조(거소투표 및 선상
투표의 접수·개표)에 따라 개
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④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候補者別 得票數의 公表전에는 이를 報道할 수 없다. 다만, 選舉管理委員會가 제공하는 개표상황 자료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179조(무효투표) ① (생략) ② <u>사전투표 및 거소투표</u>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도 이를 無效로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아니한다.	<u>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공표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u> ⑤-----제3항 또는 제4항-----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79조(무효투표) ① (현행과 같음) ② <u>거소투표</u>-----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 9. (생략)

1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제181조(개표참관) ①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으로서 하여금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參觀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開票參觀人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의 管轄區域안에서 실시되는 選舉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選舉日前日까지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申告하여 參觀하게 하되, 申告후 언제든지 交替할 수 있으며 開票日には 開票所에서 交替申告를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票參觀人의 申告가 없거나 한 政黨 또는 한 候補者가 선정한 開票參觀人밖에 없는 때에는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選舉

1. ~ 9.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소 안에서의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權者 중에서 本人의 승낙을 얻어 12인[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6인(한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者를 開票參觀人으로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가 선정한 開票參觀人은 정당한 사유 없이 參觀를 거부하거나 그 職을 辭任할 수 없다.

<삭 제>

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⑥開票參觀人은 投票區에서 송부된 投票函의 引繼·引受節次를 參觀하고 投票函의 封鎖·封印을 檢査하며 그 管理狀況을 參觀할 수 있다.

<삭 제>

⑦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內容을 識別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 이상 2미터 이내)에서 參觀할 수 있도록 開票參觀人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參觀人이 開票에 관한 違法事項을 발견하여 그 是正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여야 한다.

⑨ 開票參觀人은 開票所안에서 開票狀況을 언제든지 巡廻・監視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 開票所안 또는 一般觀覽人席에 지정한 場所에 電話・컴퓨터 기타의 通信設備을 設置하고, 이를 이용하여 開票狀況을 候補者 또는 政黨에 통보할 수 있다.

⑩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표참관인을 교대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⑦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

⑧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

⑨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
서-----
-----해
당 투표관리관이 투표소 안-----

-----.

⑩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
-----.

이 경우 정당·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⑫ (생략)

<신설>

-----.

<삭제>

⑫ (현행 제12항과 같음)
제181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명을, 무소속후보자는 3명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

되, 신고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2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6명(한 정당이 선정한 개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9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⑤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⑥ 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에

	<u>관하여는 제161조(투표참관)제7항 및 제181조(투표소에서의 개표참관)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은 “개표참관인”으로, “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소”는 “개표소”로 본다.</u> <u>⑦ 개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181조의3(투표관계서류의 인계)</u> <u>투표관리관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u>
第182條(開票觀覽) ① ~ ③ (생략) <u><신 설></u>	第182條(開票觀覽)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모든 개표장소의 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
第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	第183條(개표장소의 出入制限과

序維持) ①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와 그 上級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觀覽證을 배부받은 者와 放送・新聞・通信의 取材・報道要員이 一般觀覽人席에 들어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開票參觀人이 開票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標識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與할 수 없다.

③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이나 委員은 開票所의 秩序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開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開票所의 秩序維持를 위하여 正服을 한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에게 援助를 요구할 수 있다.

秩序維持) ①-----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 등 개표장소(이하 “개표장소”라 한다)-----

②-----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투표사무원・투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장소-----

-----.

③-----
-----개표장소-----

-----개표장소-----

-----.

④ (생 략)

⑤第3項의 요구에 의하여 開票所안에 들어간 警察公務員 또는 警察官署長은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의 指示를 받아야 하며, 秩序가 회복되거나 委員長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開票所에서 退去하여야 한다.

⑥第3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開票所안에서 武器나 凶器 또는 爆發物을 지닐 수 없다.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封印하여야 한다.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區・市・郡選

④ (현행과 같음)

⑤-----개표장소-----

-----개표장소-----
-----.

⑥-----
-----개표장소-----

-----.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

-----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투표관리관

選舉管理委員會는 開票結果를 즉시 公表하고 開票錄을 작성하여 管轄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⑥ (생략)

제212조(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

1. 투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투표관리관이 개표 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취합하여 개표록을 작성한다.

2. 개표소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12조(거소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

1. (생 략) 2. <u>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u>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 · ② (생 략) ③ <u>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당해 選舉에 참여한 政黨마다 2人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u> ④ <u>同時選舉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이 선정·申告한 者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人員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申告한 者 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抽籤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政黨이 선정·申告한 人員數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規定에 따른 政黨順位의 앞順位의 政黨</u>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第213條(投票參觀人選定 및 지정 등에 관한 特例)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	---

이 선정·申告한 者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第214條(投票函의 開函등에 관한 特例) 同時選舉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規定에 의한 開票順序는 選舉別 또는 그 選舉區의 管轄區域이 작은 選舉區別로 구분하여 행한다.

第215條(開票參觀人 등에 관한 特例) ①同時選舉에 있어서 開票參觀人은 第181條(開票參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선정·申告人員數에 불구하고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마다 8人을, 무소속 후보자는 2人을 선정·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는 거소투표·선상투표 및 사전투표의 開票를 하는 때에는 政黨 또는 候補者가 선정·申告한 者중에서 政黨은 4人씩을, 무소속후보자는 1人씩을 參觀하게 한다.

②同時選舉에 있어서 觀覽證의 枚數는 第182條(開票觀覽)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政黨別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

<삭 제>

제215조(개표관람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관람증의 매수는 제182조(개표관람)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당별로 균등하게 우선 배부한 후 무소속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하되, 후보자마다 1매 이상 배부하여야 한다.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재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
부하게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에 인쇄하는 일련번호에 관하
여는 제151조제6항 후단을 준
용한다.

② ~ ⑤ (생략)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생략)

②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선거일 오후 6시(대
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에 개
표소로 옮겨서 다른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

-----일련번호는 바코
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
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
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
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정
보를 담아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일 둘째 날
오후-----

-----.

③ -----

둘

째 날 오후

[illegible]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25(재외투표의 효력) ①

-----거소투

표-----

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는 “재외선거인등이”로, “거소
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재외
투표”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
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
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
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
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신설>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①-----

-----때에는-----

-----판결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
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경
우라도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
하거나 판결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
거 또는 당선의 유효를 결정하
거나 판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한지 판단할 때

<u><신 설></u>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	<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 정도</u> <u>2.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u> <u>3.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u> <u>4. 선거 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정도</u> <u>5. 선거 무효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u> <u>③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을 하는 경우 결정문 또는 판결의 주문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음을 명시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u>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 ----- ----- -----. 1. -----
--	--

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
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
的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
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
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오
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회계책임자 · 연
설원(제79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연설 · 대담을 하는 사람
과 제81조제1항 · 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 · 제2항
에 따라 대담 · 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
참관인 · 사전투표참관인과 개
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선장 · 임회인
에게 金錢 · 物品 · 車馬 · 響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illegible]

제공을 약속한 者

2. ~ 7. (생략)

② ~ ④ (생략)

⑤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第1項 各號의 1 또는 第2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⑥ ~ ⑧ (생략)

第239條(職權濫用に 의한 選舉의 自由妨害罪) 選舉에 관하여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者나 警察公務員(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職權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투표관리관을-----

-----.

⑥ ~ ⑧ (현행과 같음)

第239條(職權濫用に 의한 選舉의 自由妨害罪) -----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1. · 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직
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선거권
자의 투표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
능하게 한 때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① -----

1. -----

--재외투표소 및-----

2. (생략)

②開票所에서 第181條(開票參觀)의 規定에 의하여 開票參觀人이 設置한 通信設備를 破壞 또는 훼손한 者는 5년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③ (생략)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對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
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
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선거관리위
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
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
·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
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

2. (현행과 같음)

② 개표장소에서 제181조(투표
소에서의 개표참관) 및 제181
조의2(개표소에서의 개표참관)
의 규정에 따라 투표참관인 또
는 개표참관인-----

③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舉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

-----투표사무원

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략) 第248條(詐僞投票罪) ① (생략)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に 處한다. 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 (생략) ② 選舉管理委員會의 委員·職員 또는 選舉事務에 관계있는 公務員(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從事員이 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한 때에는 3年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第248條(詐僞投票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투표사무원----- ----- ----- ----- ----- ----- ----- 第249條(投票僞造 또는 增減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 -----투표사무원----- ----- ----- ----- -----
---	--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2. 選舉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생 략)

나. 제4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사용 또는 유출한 자

다. (생 략)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마. ~ 사. (생 략)

아. 제183條(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開票所에 들어간 者 또는 같은條第2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61조제7항-----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183조(개표장소의 출입 제한과 질서유지)제1항을-----개표장소에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識외의 表示物을 달거나 붙이거나 標識를 讓渡・讓與하거나 하게 한 者

3. 4. (생략)

④ ⑤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생략)

④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이 법에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바. (생략)

사. 제146조의2제3항이나 제147조제10항(제148조제4항

3. 4. (현행과 같음)

④ ⑤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73조제3항

-----.

⑤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제147조제10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아. (생략)

3. ~ 6. (생략)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4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1의2.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마. (생략)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사전투표

아.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⑧ -----

--.

1. -----단서-----

-----투표 또는 개표의 참관을-----

1의2. (현행과 같음)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47조제9항-----

--투표사무원-----

<u>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u> 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 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 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2. ~ 6. (생 략) ⑨ ~ ⑫ (생 략)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 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 원회위원, 투표관리관, <u>사전투</u> <u>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u> <u>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u>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 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 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 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 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 開票) ① ~ ③ (생 략) ④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投票 및 開票 事務管理를 전산화하 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 ----- ----- ----- 2의2. ~ 6.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 망에 대한 보상) ① ----- ----- -----<u>공정선</u> <u>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u>----- ----- -----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278條(電算組織에 의한 投票・ 開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를 選舉人이 알 수 있도록 案內文 배부·言論媒體를 이용한 廣告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國會에 交渉團體를 구성한 政黨과 協議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⑥投票 및 開票 기타 選舉事務管理의 전산화에 있어서 投票 및 開票節次와 방법, 電算專門家の 投票 및 開票事務員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제218조의
19제1항-----

⑤ (현행과 같음)

⑥-----투표사무원-----

-----.